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6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이종배

박충권 • 이인선 • 박성훈

정동만 • 고동진 • 임이자

송석준 · 유용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.

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,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,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(안 제12조의 3).

법률 제 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"확인 및 본인 인증"을 "확인(제21조제2항제2호, 제21조제2항제3호, 제21조제2항제4호의 12세이용가, 15세이용가,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게임과몰입 예방조치	제12조의3(게임과몰입 예방조치
등)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[「정	등) ①
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	
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	
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	
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	
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	
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는 게	
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	
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	
물 이용 방지 조치(이하"예방	
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	
	<u>.</u>
1.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	1
시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	<u>확인(제21조제</u>
<u>인증</u>	2항제2호, 제21조제2항제3호,
	제21조제2항제4호의 12세이용
	가, 15세이용가, 청소년이용불
	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을
	<u>포함한다)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3.	청	소]	년	본	인	또	는	법	정	대	리
•	인의] .	요 >	청	시	게	임딑	5	0]	용	방
1	법,	게	임	물	0].	용ス	1간	Ę	=	제	한
<	<단	서	신	설	>						

- 4. ~ 7. (생 략)
- ② 삭 제
- ③ ~ ⑦ (생 략)

3							
	<u>다만,</u>	제2	21조제	레2항	제1호	의	<u>전</u>
	체이성	용가	게임	물의	경우	는	제
	외한다	<u> 구.</u>					

- 4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